

## EPC 發効와 그 機能

— 權利存續은 20年, 出願은 英·佛·獨語 共用 —

### 來年 6月 유럽特許廳 始務

지난 10月7일에 유럽特許協定(European Patent Convention : EPC)이 發効함에 따라 그 國際事務局인 유럽特許廳(European Patent Organization)이 11월에 檣헐에 創設되어 來年 6月1일부터는 그 機能을 發揮하게 된다.

기능의 첫째 條件이 加盟國의 特許出願業務處理이다. 다시 말해서 가맹된 나라의 特許業務를 共同處理하는 共同特許制度가 創設된 것이다. 현재까지의 가맹국은 오스트리아, 벨지움, 덴마크, 프랑스, 西獨, 그리스, 에이레, 이탈리아, 리히텐시하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英國 등 모두 16個國이다.

이 협정은 1973年 10月5일에 各國이 署名하고 그후 協定을 批准함으로써 이번에 發効한 것이다. 따라서 가맹국의 發明者는 EPO에 출원하면 모든 가맹국에서 발효하여 이른바 유럽특허를 取得할 수가 있게 된다.

이 협정이 발효되었어도 各國의 國內法으로 規制되는 事項이 있으나 公同사항은 유럽특허의 存續期間이 20年이며 技術의 保護의 範圍도 規定하고 있고 특허의 取消을 各 國內法院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협정에서 규정하는 特定根據에서만 可能하다.

檣헐의 本廳 外에 헤이그에 支廳을 두었으며 EPC에 是 각국대표들로 構成되는 管理理事會(Administrative Council)가 EPO의 업무를 監督한다.

또한 헤이그에는 受理課를 두고 本廳의 機構는 審査部, 異議部, 審判部擴大審判部를 두게 되어 있으며 特殊部署로서는 本廳에 特許管理部, 取消部, 取消審判所가 있다.

### 出願은 英·佛·獨語 共用

EPO의 公用語는 英, 佛, 獨語이며 그가운데 어느 한 용어를 使用하면 된다. 그리고 출원은 EPO에 直接

出願하거나 가맹국의 특허청에 출원할 수가 있다. 용어는 公용어 이외의 용어사용가맹국에 營業所나 住所를 갖고 있는 出願人은 그 나라 용어로서 출원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3個月 以內에 公용어중의 하나로서 翻譯文을 提出해야 한다. 또한 출원 때에는 그 특허를 適用하고자 하는 가맹국을 指定해야 한다.

한편 헤이그지청 수리과에서는 출원에서 公告까지의 過程만을 맡고 있으며 新規性 判斷을 위한 調査의 必要性을 審査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하였을 때 비로서 着手하게 된다.

특허출원은 출원한 날로부터 18個月이 지나면 신규성조사의 報告書와 함께 공고된다. 또한 출원인은 6개월 이내에 자기 출원의 심사를 請求할 수가 있으며 만약 6개월 이내에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없으면 이 출원은 取下된 것으로 着做 處理된다.

한편 심사가 청구된 출원은 本청으로 移管되어 심사부에서 발명의 신규성과 發明要件, 事業上 利用의 可能性을 確認하게 된다.

심사에 따른 特許對象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심사가 끝나면 유럽특허가 賦與되고 明細書는 출원때 사용한 公용어로 공고되나 특허청구 범위는 3개 公용어로 모두 공고된다.

### 特許賦與 9月內에 異議申請

특허가 부여된 9개월 이내에는 누구라도 EPO의 부의 査定에 대한 의의를 提起할 수가 있다. 이의 妥當性은 심판부에서 審決하고 심결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확대심판부에 上訴할 수가 있다.

그러나 當分間은 기술의 一定分野에서만 출원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으며 5년 이내에 全分野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發効 15年동안에는 公용어가운데서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 가맹국 특허청은 출원심사에 관한 準備 作業을 委託받을 수가 있는 利點이 있다.

# WIPO 및 其他 國際工業所有權機構 主要會議 日程

1977. 9~1979. 9 (日程은 暫定的인 것임)

## ◇ WIPO (世界知的所有權機構) ◇

### ● 1977年

△ 9. 21~23, (제네바)—ICIREPAT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nformation Retrieval Among Patent Offices : 政府間特許情報補完協力委員會) 全體委員會

△ 9. 26~10. 4 (제네바)—WIPO 調整委員會, 파리, 베른同盟 各執行委員會, 마드리드同盟總會 및 理事會

△ 10. 10~18 (제네바)—PCT (特許協力條約) 臨時委員會

△ 10. 17~28 (런던)—IPC (國際特許分類協定) 第3實務委員會

△ 10. 24~28 (제네바)—ICIREPAT 調查制度技術委員會 (TCSS)

△ 10. 24~11. 2 (제네바)—니이스協定 商品 및 서어의 알파벳順配列에 관한 臨時實務委員會

△ 11. 7~11 (제네바)—開發協力委員會 標章 및 商號에 관한 開發途上國示範法律實務委員會

△ 11. 7~11 (파리)—ICIREPAT 標準化에 관한 技術委員會 (TCST)

△ 11. 14~21 (제네바)—IPC 運營委員會

△ 11. 14~25 (제네바)—파리同盟 파리條約修正에 관한 政府間 豫備委員會

△ 11. 22~25 (제네바)—IPC 專門委員會

△ 11. 28~12. 6 (파리)—베른同盟 執行委員會 臨時會議

△ 12. 7~9 (제네바)—錄音 및 放送機關의 演技者 및 製作者保護를 위한 國際條約政府間委員會 定期會議 (國際勞動機構 (ILO) · UNESCO 共同主催)

△ 12. 8~9 (제네바)—베른協定 版權 및 隣近權分野에 있어 法律 및 條約出版合理化에 관한 實務委員會

### ● 1978年

△ 2. 15~24 (파리)—베른協定 印稅의 重複課稅에 관한 政府間專門委員會 (UNESCO와 共同主催)

△ 3. 6~10 (제네바)—長期計劃에 따른 特許文獻에서 拔萃된 技術情報에 관한 實務委員會

△ 3. 13~15. 17 (제네바)—長期計劃에 따른 工業所有

權에 관한 常任開發協力委員會

△ 3. 16, 17, 20 (제네바)—長期計劃에 따른 版權 및 隣近權에 관한 常任開發協力委員會

△ 9. 26~10. 2 (제네바)—WIPO 調整委員會, 파리 베른協定 執行委員會

### ● 1979年

△ 9. 24~10. 2 (제네바)—WIPO 總會, 調整委員會, 파리 · 마드리드 · 헤이그 · 니이스 · 리스본 · IPC · 베른協定 各 總會, 파리 · 헤이그 · 니이스 · 베른協定 各 代表者會議, 파리 · 베른協定 各 執行委員會, 마드리드協定 理事會, 리스본協定會議

## ◇ UPOV (植特許同盟) ◇

### ● 1977年

△ 9. 6~8 (아르슬레브, 덴마크)—植物에 관한 技術實務團會議

△ 9. 20~23 (제네바)—變種命名에 관한 實務委員會

△ 9. 20~23 (제네바) UPOV 條約修正 및 解釋에 관한 專門委員會

△ 11. 5~17 (제네바) 技術運營委員會

△ 12. 5~9 (제네바) 諮問委員會

△ 12. 6~9 (제네바) 審議委員會

## ◇ 其他 知的所有權에 관한 國際機構會議 ◇

### ● 1977年

△ 9. 8~9 (앤드워드)—ILAA (International Literary and Artistic Association : 國際文筆 및 藝術協會) 實務委員會 및 執行委員會

△ 9. 18~21 (에딘버그)—ILAUC (International League Against Unfair Competition : 國際不正競爭防止同盟) 實務委員會

△ 9. 22~23 (더블린)—UEPA (Union of European Patent Attorneys : 유럽辨理士協會) 執行委員會

△ 10. 25~27 (베오그라드)—EUROPHOT (Council of the professional photographers of Europe : 유럽寫眞作家委員會) 總會